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6. 3.

재 정 경 제 부

목 차

제1편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 1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 2

1. 법적근거 ····· 2
2. 운영절차 ····· 2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 운영 실적 ····· 4

1. 조세지출 현황 ····· 4
2. 조세지출 성과평가 운영 실적 ····· 7

Ⅲ. 2026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 8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 8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 9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 10

Ⅳ. 2026년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 13

제2편 202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 17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 18

1. 건의 · 평가 제도의 의의 ····· 18
2. 조세지출 건의서 ····· 19
3. 조세지출 평가서 ····· 19
4. 국세감면액 총량 관리 강화 ····· 20

Ⅱ. 202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 21

제1편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

○ **(조세지출 성과제고, 조특법 제142조)**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규정(참고1)

○ **(국세감면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 규정

□ 재정경제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운영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31.**까지 **각 부처에 통보**

□ **(건의서 · 평가서 제출)** 각 부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매년 4.30.**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건의서)** 조세감면의 **신설·확대**가 필요한 경우, **정책목적·정책효과·연도별 세수효과·세출예산 중복여부 및 세수감소 보완방안**을 포함한 **조세지출 건의서** 제출

○ **(평가서)** **일몰도래 조세특례** 등*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분석,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및 **의견** 제출

* ①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참고 1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1 **(예비타당성평가)** 조세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 평가

○ 각 부처는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31.**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 필요시 해당연도 1.31.까지 추가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가능

○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 법률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2 **(의무심층평가)**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 평가

○ 재정경제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3 **(임의심층평가)**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

< 임의심층평가 대상 >

-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항
-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항
- 그 밖에 재경부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부처자율평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①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②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③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④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 운영 실적

1. 조세지출 현황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26년 조세지출예산서('25.9월)에 따른 '25년 국세감면액은 76.5조원 전망

○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증가**(6.0조원, 8.4%*)하나, **국세수입총액이 더 증가**(35.1조원, 9.6%)하여 **국세감면율 하락**(△0.1%p) 예상**

* 국세감면액 증가율(%): ('20)6.8 ('21)7.7 ('22)11.4 ('23)9.8 ('24)1.1 (5년 평균)7.4

** '25년 국세감면액 최종 확정치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표('26.8월말)

(단위: 조원, %)

구 분	'24년(실적)	'25년(전망)	'26년(전망)
▪ 국세감면액(A)	70.5	76.5	80.5
▪ 국세수입총액(B)*	365.7	400.7	419.6
▪ 국세감면율[A/(A+B)]	16.1	16.0	16.1
▪ 국세감면한도**	14.6	15.5	16.5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입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 §88) =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관리유형별 현황)** '25년 감면액 중 조세지출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 비중**은 **17.6조원**으로 **약 23.0%** 수준(참고2)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을 **제외**한 **국세감면액**은 **58.9조원**, **국세감면율**은 **14.7%** 수준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70.5	100.0	76.5	100.0	80.5	100.0
- 구조적 지출	16.4	23.2	17.6	23.0	18.9	23.5
- 잠재적 관리대상	21.5	30.5	22.4	29.3	22.9	28.4
- 적극적 관리대상	32.4	46.0	36.2	47.4	38.5	47.8
- 경과규정	0.2	0.3	0.2	0.3	0.2	0.3

※ 구조적 지출: 이중과세조정, 필요경비공제 등 조세의 기본체계에 해당하여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항목(건강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잠재적 관리대상: 지원 대상·목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 적극적 비과세·감면 정비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애인용 보장구 VAT 영세율 등)

참고2 관리유형별 조세지출 항목

< 구조적 지출 항목 명세 >

[8개 항목]

조 항	내 용
소득세법 §12 3(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51①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2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3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①6	한부모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9의2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다자녀)
소득세법 §59의4①, §52①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명세 >

[43개 항목]

조 항	내 용
부가가치세법 §42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소득세법 §59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②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③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④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법인세법 §2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관세법 §91 4,5	장애인용품 등의 관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18①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31,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특법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3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 항	내 용
조특법 §39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4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조특법 §46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8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5	기부장려금
조특법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특법 §100의2~13	근로장려금
조특법 §100의27~31	자녀장려금
조특법 §105①4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5,6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의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5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106①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9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특법 §106②22 등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의2①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117①7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법 §121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 성과평가 운영 실적

□ **(운영결과)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및 **부처 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에 대해 **사전·사후관리** 시행

○ **(예비타당성평가, 1건*)** 타당성 부족으로 **제도 미도입**

*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 **(심층평가, 27건)** 일몰종료 등에 대한 **의무심층평가 23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임의심층평가 4건**

- **의무심층평가** 결과 **재설계 7건, 일몰종료 1건, 유지 15건**
- **임의심층평가** 결과 **재설계 1건, 유지 3건**

○ **(세법개정 반영)** 부처 **자율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일몰도래** 제도(총 72개) 중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 달성한 제도 **16개 정비**

- 특히, **심층평가** 결과 **축소 등 재설계** 및 **폐지 의견***을 **전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 (축소 등 재설계 8건)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등
(폐지 1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집행관리)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사전관리)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사회적·경제적 상황 대응**을 위해 **긴요**한 **제도**는 **예타 면제**

- **예타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3건***에 대하여 해당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국회 제출**('25.11.)

* ①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②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③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

○ **(사후관리)**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폐지·축소** 의견인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환류 지속 강화**

- **전략산업 지원**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한 조세특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Ⅲ 2026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1. 조세지출 운영여건

◇ (경제) 경기 회복세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 구조적 과제 상존

○ '26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확대**가 **예상**

- 다만, **외환·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 美관세**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잠재** 속에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등 **불확실성 확대**

○ **인구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소득·지역간 격차** 등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

* 잠재성장률(%, 연평균, 한국은행): ('16~'20)2.6 → ('21~'23)2.1 → ('24~'26)2.0

◇ (세입) 경기회복으로 세입여건 양호하나, 불확실성 상존

○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증가 예상**되나,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변동성** 존재

-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우려

○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정책 비전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조세지출

정책 목표	
	❶ 경제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❷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 조세지출 정비 ❸ 조세지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조세지출 운영방향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뒷받침 ▪ 외환·금융·부동산 리스크 관리 지원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	▪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 조세지출제도 재설계 및 재정지원 전환 ▪ 성과평가 제도의 적극적 운용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한 일몰제도 개선 ▪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총량 관리 강화 ▪ 조세지출 보고제도 객관성·효율성 제고

3. 조세지출 기본 운영 방향

◇ 경제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1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

○ 연구개발·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전략·신성장 원천기술**을 지정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 지원

○ 국내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에 대응

○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으로 첨단산업, 국내 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지원

○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지출 **합리화,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대전환** 지원

2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뒷받침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촉진

○ **EITC 개선방안** 마련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 **청년층 생활·자산형성** 지원

3 외환·금융·부동산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 **외환·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확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원

◇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

1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 **전체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지원 필요성, 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형별 정비대상을 선정***, **전략적·획기적 정비** 추진

* 제도 폐지, 재정지출 전환, 제도 재설계, 지원 상시화, 성과평가 후 결정 등

○ **정책목적 달성**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운영**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

2 조세지출제도 재설계 및 재정지원 전환

○ 정책목적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를 통해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 수도권 집중 심화, 기술발전,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조세지원 대상·방법·수준 등 조정

○ 지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거나 **유사·중복지출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3 성과평가 제도의 적극적 운용

○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등 성과평가 제도를 **적극 운용**하여 **세제지원**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정비

- 현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일몰 도래시 **심층평가 등 성과평가**를 통해 **정비 여부 재검토**

- 조세지출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 방지

◇ 조세지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1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한 일몰제도 운영 개선

○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여 **일몰 장기화 차단**

* 일몰 재도래시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 등 의무화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제도**도 **주기적 심층평가**(5년)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2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완대책**의 제출대상을 **신규 감면 요청**에서 **기존 감면 연장요청**까지 **확대**('26.2. 조특령 개정)

○ **세수보완대책 총괄표** 도입*으로 **부처 단위로** 세수감소 및 재정확충 **총량을 파악**하여 **재정확충액 한도 내 감면신설** 등 허용

* (종전) 개별 조세지출 단위로 세수감에 대한 재정확충방안 제출
(개선) 부처별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감 총량에 대한 재정확충방안 제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 도입**

* 신규 기술 요청시,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한 지원대상 축소 검토

3 조세지출 보고제도 객관성·효율성 제고

○ **「조세지출결산서*」** 도입('26년)으로 조세지출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 심의·관리 강화**

* 국회 결산심사시 전년도 조세지출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년도 실적·분석을 포함한 조세지출결산서를 8월말까지 국회 제출('25.12. 조특법 개정)

○ **조세지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대상 **조세지출 범위 합리화방안 마련**

Ⅳ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시행 및 환류

○ **(예비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시급성 등 평가대상 선정기준(운용지침 §14)에 따라 **조세지출 1건***에 대해 **타당성 평가**

* 국내생산촉진세제

○ **(심층평가)** '26년 **일몰도래 제도 등 총 31건**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의무심층평가)** '26년말 **일몰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4건***에 대해 **의무심층평가**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17건***에 대해 **임의심층평가** 실시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 **예비 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등 환류 강화

□ 부처 제출 건의서 및 평가서 관리 강화

○ 건의서·평가서 작성 지침에 맞게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세수효과** 및 **통계자료, 세수보완대책** 등 **충실한 작성** 요청

○ 신규 감면요청 외 **기존 감면의 연장요청시**까지 **세수보완대책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부처 단위**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를 작성**

’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1건)	국내생산촉진세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을 국내 생산시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심 층 평 가 (31건)	①※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임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
	②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 취업후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청년의 경우 90%)
	③※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임의)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임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④※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5%~45% 감면
	※(임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⑤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⑥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면제
	⑦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⑧※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⑨※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 1대당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임의)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6. 12. 31.까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1대당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⑩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유류세 환급
	⑪※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운항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임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 사용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임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리터당 56원 감면
	⑫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⑬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⑭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의료비·교육비의 15%,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
	(임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이 지방정부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 양도시 3년) 이상 직접 경작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임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임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임의)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시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
	(임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모 부동산펀드·리츠에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임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임의)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 거래를 위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특례 내용이 유사한 제도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

’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추진일정

<table>
<tr><th>구분</th><th>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th><th>신설 제도</th><th>기타</th></tr>
<tr><td>1월</td><td colspan="2">금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연구기관 선정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td><td rowspan="6">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td></tr>
<tr><td>2월
~
5월</td><td>심층평가 실시
(2월~)</td><td>예비타당성평가 실시
(3월~)</td></tr>
<tr><td>6월
~
7월</td><td colspan="2">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27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td></tr>
<tr><td rowspan="2">8월</td><td></td><td>(각부처 → 재정경제부)
’27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td></tr>
<tr><td colspan="2">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td></tr>
<tr><td rowspan="3">9월
~
12월</td><td colspan="2">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td></tr>
<tr><td>’27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td><td>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선정에 따른 ’27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td></tr>
<tr><td colspan="2">’27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td></tr>
</table>

제2편

202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건의 · 평가 제도의 의의

□ **(의의)**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정책결정에 활용**

○ **(조세지출 건의서)**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제도의 **신설** 또는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 **(조세지출 평가서)** 각 부처의 **소관 조세지출**의 운영성과에 대한 **자율적 평가** 실시

- **조세감면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반드시 포함**('26년 신규 시행)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 제3항, 제4항(신설)
국가재정법 제88조 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세지출 건의서

□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세감면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지출 건의서** 작성·제출(~4.30.)

○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 포함

※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서 제출**(전년 8월)

□ 새로운 조세감면 요청 시 감면액 보충을 위해 **기존 감면액의 축소·폐지방안**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법적의무**(국가재정법 §88)

○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 대상**

3. 조세지출 평가서

□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4.30.)

○ 해당 연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등에 대해 조세지출의 **효과** 및 **존치 여부**(범위 확대 포함) 등을 **자율 평가**

○ 소관 조세지출 중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

○ **다수 부처가 관련**된 조세지출은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작성**

※ 소관분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관부처를 지정한 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조정

□ **제도 존치 의견 제출**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반드시 포함(조특법 §142④ 신설)

○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작성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수시 보완 요청 대상**이며, **심층평가** 및 조세지출 **정비 대상**으로 **우선 고려**

4. 국세감면액 총량 관리 강화

□ (세수보완대책 관리 강화) 금년부터 **세수보완대책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단위**로 **책임**있는 **세수보완대책** 마련 추진

* **(기존)** 소관부처의 **신규 감면요청시** 감면액 보충을 위한 **국세감면 축소·폐지** 등 제출
(개선) 기존 감면 연장요청시까지 **세수보완대책 제출** 확대('25.12. 조특법 개정)

○ 부처별로 **조세감면 신설·확대·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총량**과 **세수보완대책**에 따른 **재정확충액 총량**을 제출

< '2026년 세수보완대책 총괄표 >
- 0000부 -

예상 감면액					세수보완방안			
연번	유형	관련 조문	조세지출 명	감면액 (억원)	연번	유형	세수보완방안	재정효과(억원)
			평가 대상 소계:				평가 대상 소계:	
평가-1	연장	조특00	00사업자 세액감면	999	평가-1	예산	00지원사업 축소	999
평가-2	확대	조특00	00부가가치세 면제		평가-2	조세	00세액공제 축소	
			건의 대상 소계:				건의 대상 소계:	
건의-1	확대	조특00	00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건의-1	예산	00지원사업 축소	
건의-2	신설	-	00세액공제		건의-2	조세	00세액공제 축소	
			계:				계:	

1) 세수보완방안은 해당 부처 소관 예산사업, 조세감면만 가능
2) 감면액·재정효과는 향후 5년간 누적법으로 작성

○ 부처별 **재정확충총액**을 **기준**으로 **감면 신설·확대·연장 추진**

○ 부처가 제출한 재정확충방안 중 **재정지출 사업 조정 방안**은 **기획처 통보** 및 실제 **예산안 반영** 여부 **모니터링**

□ (**첨단기술 총량관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첨단기술 총량 관리** 추진

○ **지원기술 추가 요청**시, 부처별 **기존 지원기술**의 범용화·노후화 수준 등 **기술 평가서 제출**을 통해 지원대상 축소 우선 검토

Ⅱ 202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1 '26년말 일몰도래 79개* 항목(중복 제외시 65개)

* 동일 항목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 계산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조특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교육부	조특	106	1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방부	조특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국세청	조특	104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국토교통부	조특	6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	7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77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85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5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87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98의9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	105	1	3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	106	1	4의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금융위원회	조특	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4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39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4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5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	104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1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신용협동조합)
	조특	117	1	5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연기금 차익거래)

	조특	117	1	16, 23, 24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	126의 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관세)
기후 에너지 환경부	조특	109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7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8	1	3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농림축산 식품부	조특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68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69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조특	106	1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농업)
	조특	106의 2	1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6	1	5,6 ,9		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농업협동조합)
	조특	116	1	7,1 1		농지은행사업 인지세 면제 등
	조특	121의 23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	42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문화체육 관광부	조특	104의 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보건 복지부	조특	92				혼인세액공제
산림청	조특	106	1	12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	106의 2	1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임업용)
	조특	116	1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산림조합)
산업 통상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04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조특	109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09	7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	111의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	121의 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2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	121의 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21의 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벤처기업부	조특	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	1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46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116	1	19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부가	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해양수산부	조특	67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	106	1	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11	1	2		
	조특	106	1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어업)
	조특	106의 2	1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어업용)
	조특	106의 2	1	2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특	111의 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	116	1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수산업협동조합)
	조특	121의 25	7,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안전부	조특	71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	116	1	5,6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새마을금고)

2 일몰 없는 47개* 항목(중복 제외시 42개)

* 동일 항목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 계산

부처명	법률	조문	항	호	목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조특	88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특	10	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교육부	소득	12		3	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소득	14	3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과세특례
		63				
	소득	59의4	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국가유산청	소득	12		5	바, 사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비과세
국방부	소득	14	3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과세특례
		63				
국세청	조특	100의 2~13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56의2				기장세액공제
	상증	22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	69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국토교통부	조특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141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소	18	1	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영업용)
	소득	12		3	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소득	52	4,5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상증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위원회	조특	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14	3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비영리단체가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농림축산식품부	조특	70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105의 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농업용)
	조특	121의 23	6,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세특례 및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12		2	다, 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농가부업·전통주 제조)
문화체육관광부	조특	104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개소	1	3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등
		19의2		3		
	개소	19의2		1,2		골프선수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	19의3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법무부	소득	12		5	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및 보로금에 대한 비과세
보건복지부	조특	75				기부장려금
	조특	100의 27~3				자녀장려금 지급

		1				
	조특	106	1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소	18	1	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다자녀가구)
	소득	12		3	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	59의2				자녀세액공제
	소득	59의4	2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산림청	조특	105의 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임업용)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조특	76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성평등 가족부	소득	51	1	3		부녀자 추가공제
	소득	51	1	6		한부모 소득공제
외교부	조특	110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특	111의 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지식 재산처	소득	12		3	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12		5	라	
해양 수산부	조특	105의 2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어업용)
	조특	121의 25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과세특례)
	소득	12		2	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어로어업 소득)
행정 안전부	소득	12		5	다	상훈법상 훈장에 부속한 부상 또는 각종 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소득	14	3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과세특례
		63				